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씨크릿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카드사명 변경, 행명 변경,
문구 수정(하나N뱅크 -> 스마트폰뱅킹), 용어 변경(상호부금 -> 적립식예금)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『씨크릿 적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	『씨크릿 적금』 특약	구행명삭제
제 1 조 약관의 적용 “씨크릿 적금”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 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 』(구 하나은행) 및 『 <u>적립식예금 약관</u> 』(구 하나은행)을 적용한다.	제 1 조 적용 범위 “씨크릿 적금”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 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 』 및 『 <u>적립식예금 약관</u> 』을 적용한다.	조항명 변경 구행명삭제
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으로</u> 하며, 1인 2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	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</u> 하며, 1인 2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	개인사업자 문구 추가
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<u>상호부금으로 한다.</u>	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<u>적립식예금으로 한다.</u>	용어 변경
제 4 조 ~ 제 6 조 (생 략)	제 4 조 ~ 제 6 조 (좌 등)	
제 7 조 이자 ① ~ ③ (생 략) ④ (생 략) - (생 략) - (생 략) - <u>하나카드(구 하나SK카드에 한함) 월 10만원이상 하나은행계좌로</u> 결제하거나 월 10만원이상 적금 자동이체 또는 이 예금 신규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 가입 시 (연 0.1%) -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<u>하나 N뱅크</u> 가입 시(연 0.1%)	제 7 조 이자 ① ~ ③ (좌 등) ④ (좌 등) 1. (좌 등) 2. (좌 등) 3. <u>하나카드</u> 월 10만원이상 <u>KEB하나은행계좌로</u> 결제하거나 월 10만원이상 적금 자동이체 또는 이 예금 신규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동시 가입 시 (연 0.1%) 4. 이 예금 가입 월 이후 3개월 이내 <u>스마트폰 뱅킹</u> 가입 시(연 0.1%)	카드사 및 행명 변경 문구 수정
제 8 조 분할해지 분할해지는 <u>하나은행 및 제휴 하나카드(구 하나SK카드에 한함)</u> 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도해지금리로 적용하여 가능하며,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허용한다.	제 8 조 분할해지 분할해지는 <u>KEB하나은행 및 제휴 하나카드</u> 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로 입금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중도해지금리로 적용하여 가능하며, 만기해지 포함 총 3회까지 허용한다.	카드사 및 행명 변경